

함께하는 FTA

November 2016 vol.54

KOREA-NEW ZEALAND FTA

KOREA-VIETNAM FTA

1ST ANNIVERSARY

한·베트남 / 한·뉴질랜드 FTA 발효 1주년

베트남의 새로운 수출입법

TPP 현황과 메가 FTA 대응 전략

한중FTA 활용, 1 3 8 0 차이나데스크에 다 있다!

'차이나데스크'는 한중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한중FTA 활용, 차이나데스크 상담은?

국번 없이 1 3 8 0

<http://fta1380.or.kr>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층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한국무역협회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T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ssociation

글 김선녀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대전세관 통관지원과 고동균 계장

관세청·세관과 좀 더 가까워지세요!

지난 7월 관세청에서 주최한 2016년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세종시에 위치한 광학필름수지 전문기업 (주)이오나노켐에게 돌아갔다. 수출초보기업이었지만 FTA에 대한 기업 자체의 의지와 대전세관의 협력으로 최상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수상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이가 있으니, 바로 대전세관 통관지원과의 고동균 계장이다. 고동균 계장은 대전, 세종, 충남지역의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컨설팅 업무와 기업 실무자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FTA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5월 세관장님 지시로 기존 수출기업과 수출초보기업, 전문인력 육성 등 각 대상에 따른 다양한 FTA 활용 컨설팅 및 교육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함께한 (주)이오나노켐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부터 FTA 활용과 환급까지 한 번에 진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제도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처음 접하는 FTA와 관세 관련 전문용어를 어려워한다. 그러나 (주)이오나노켐의 경우 FTA와 관련해 많은 공부를 한 뒤 방문한 덕에 세관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그 만큼 빠른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다며, 고동균 계장은 기업 내에서 FTA에 대한 관심과 사전 공부가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그는 기업 FTA 상담 및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며 많은 기업들이 세관을 어려워하는 부분을 아쉬워했다.

“근래 들어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 등의 전통적인 역할 외에 FTA와 AEO 업무 등 수출입업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업무 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매년 정부기관 중 정부업무평가 최상위 등급을 달성했을 만큼 많은 관세청 직원들이 친절한 마인드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를 방문하면 아직도 일부 기업들이 세관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조금 안타깝습니다.”



고동균 계장은 기업에 최적화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관 담당자가 업체를 상세히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관과 기업이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국내에서는 FTA 활용을 지원하고, 해외에서는 수출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FTA 등 통관과 관련한 애로발생 시 해외 세관을 통해 직접 수입국 세관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 수출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관세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해본다. ☺



24

Contents

November 2016 vol.54



COVER STORY

2015년 12월 발효된 한·베트남 FTA와 한·뉴질랜드 FTA가 1주년을 맞두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경기 불황 등 국내외 어려운 통상환경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뉴질랜드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의 배경에는 두 국가 간 체결한 FTA가 있었다. 지난 1년간 진행해온 두 나라 간의 FTA 성과를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할 시점이다.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6년 11월 1일(통권 54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People

- 01 대전세관 통관지원과 고동균 계장

Issue Focus

- 04 한·EAEU FTA 체결 논의 시작 외
 06 Global FTA News
 08 2016년 하반기 원산지검증 정보 분석 경진대회

FTA Cartoon

- 10 베트남과 뉴질랜드 FTA, 수출 1등 공신!
 안종만

Cover Story

한·베트남/한·뉴질랜드 FTA 발효 1주년

- 12 한·베트남 FTA 발효 1주년 성과와 시사점
 변상현(KOTRA 호치민 무역관)
 14 베트남의 새로운 수출입세법
 16 한·뉴질랜드 FTA 1주년 성과
 18 한·뉴질랜드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최종진(KOTRA 오클랜드 무역관)

Special Report

- 20 FTA 정보 제공 포털사이트
 22 TPP 긴급 진단으로 되돌아 본
 메가 FTA 시대 대응전략

FTA & Company

- 24 2016년 FTA 활용 우수 기업 탐방: (주)백제교역

FTA Study

- 26 보호무역주의 재림(再臨)과
 비관세장벽의 대두(擡頭)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 28 실전 품목분류: ④ 시계
 이민선 관세사(Ciel Plus)

- 30 한·중 FTA 비관세 장벽 이해 및 활용:
 전시회 및 미인증 품목 적발 건수 증가,
 절차 숙지 필요
 김기현(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 32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⑧ 중국 지식재산권 형법 II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 34 실전 FTA 활용 노하우:
 인증수출자 고시 개정 주요내용
 유영진 관세사(세정관세법인)

- 36 FTA 사후검증tip: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사항
 유영웅 관세사(관세법인 네오)

Art & Culture

- 40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④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FTA News

- 42 한·에콰도르 SECA 제4차 협상 외

FTA Square

- 44 FTA 정보 & 독자의 소리



글 김은진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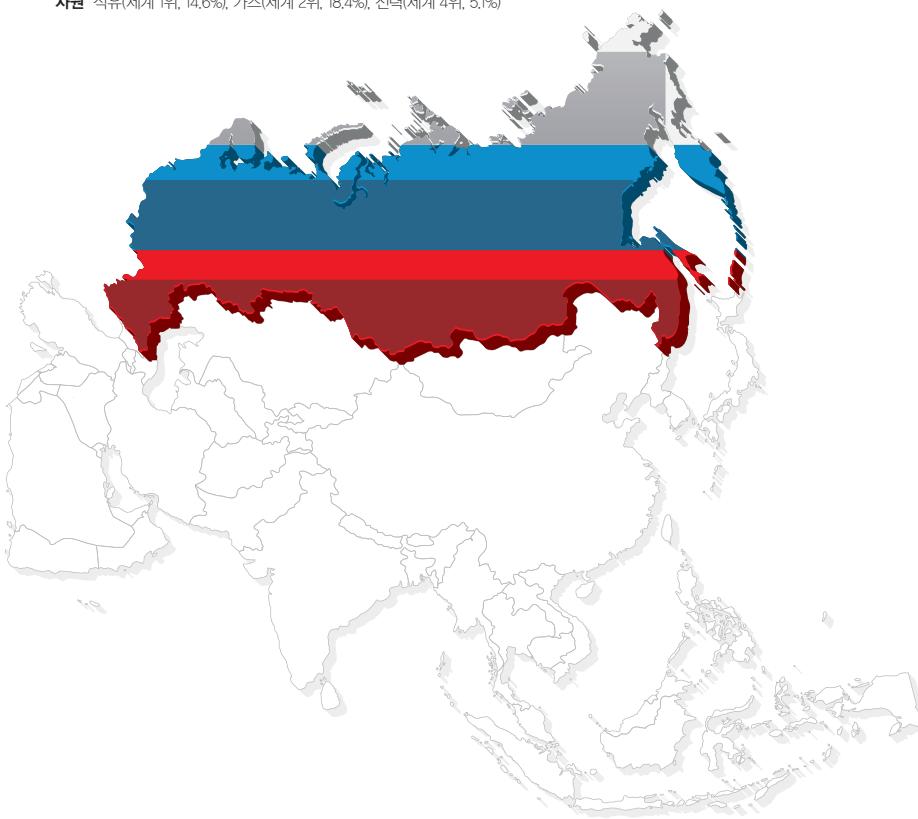
한·EAEU FTA 체결 논의 시작

새로운 무역 실크로드, 유라시아로 통하다

EAEU는 2015년 1월 공식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협력기구로, 러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과거 구소련 연방 시절의 국가 가운데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자원부국으로 잠재력이 큰 연합체지만, 최근 러시아의 경제침체로 인해 EAEU의 전체적인 경기가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IMF, 월드뱅크 등의 경제기관은 2017년 러시아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EAEU Info.

대외무역 규모 전 세계 무역규모의 3.7% 차지(2014년 기준)
인구 1억 8,000만 명(전 세계 인구의 2.5% 차지)
자원 석유(세계 1위, 14.6%), 가스(세계 2위, 18.4%), 전력(세계 4위, 5.1%)



작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협력기구 EAEU와의 FTA를 위한 연구 및 준비가 지난 2015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 러시아는 우리 기업이 일본 다음으로 FTA를 선호하는 국가로 조사되었다.

한·EAEU FTA 체결을 위한 준비

2015년 11월 민간차원에서 한국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러시아 RFTA(대외무역아카데미)는 FTA 타당성검사를 진행했고, 2016년 8월 연구 결과 한·EAEU FTA 추진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2016년 9월 3일 한러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EAEU FTA 체결 논의를 양 정부 고위급 수준에서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이 러시아와의 FTA를 일본 다음으로 선호하는 국가로 조사됐을 정도로 우리 기업 인들에게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이후 지난 10월 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우리나라와 EAEU 회원국 정부 간 회의가 개최되어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EAEU 집행기관인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베로니카 니키ши나 통상장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KIEP는 자원이 풍부한 EAEU 국가들이 최근 자국 제조업 육성 등을 활발히 하고 있어 향후 양측의 교역 품목 다각화가 기대되며, 지역 개발을 위해 각 정부가 외국투자유치 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KIEP는 RFTA와의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앞선 기술과 EAEU 지역 개발추진정책이 만나면 유망한 상호 협력 분야가 도출되므로, 이를 위한 정보 공유와 전략적 투자협력 분야의 공동 투자 기금 설립이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6년 9월 3일 한러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 정부 고위급 수준에서 한·EAU FTA 체결을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투자금 조정을 위한 정부 간 협력 강화돼야

한국이 EAEU와 FTA를 체결할 경우 EAEU 지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관세 인하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AEU의 경제 주축인 러시아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EAEU 국가들은 동반 경기 하락을 보이고 있고, 일부 고가품이 필수적인 최첨단 분야를 제외하고는 저가상품 판매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EAEU에 자동차, 기계, TV 등 제조업 분야의 공산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고, EAEU 지역은 한국 수출품의 대부분이 원유, 가스 등 자원에 치중돼 있는 불균형 교역 상황으로, 단순 관세 하락이 주가 되는 FTA는 EAEU 측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오퍼가 아닐 수 있다. 양측이 추진하는 FTA는 세금 절하뿐만 아니라 공동 프로젝트 조성과 협력 강화가 동반돼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로가 원원하는 최적의 경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제안하듯 양측이 전략적 투자협력분야를 발굴해 이를 위한 공동투자 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특히 자국 제조업 육성 및 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인 러시아의 경우 투자유망분야가 농업, 조선, 건축, ICT 등 다양하나 투자금 조정부분에서 마련된 정부 간 툴이 부재하다 보니, 우리 기업들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의 호기를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EAEU 측이 기대하는 한국의 투자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 측은 투자환경 조성(투자금 공동 펀드 포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양측의 입장이 원활하고 현실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❷

정리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Cambodia–Malaysia]

캄보디아·말레이시아 무역협정 체결



오래된 두 나라의 수교 관계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의 관계는 1996년 12월 2일에 처음 시작되었다.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모두 ASEAN 가입국이며,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의 전 왕들 역시 국제적 관계를 맺는 것을 지지해왔다.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의 수출입 동향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Neak Oknha Kith Meng 캄보디아 통상부(Cambodian Chamber of Commerce) 회장은 말레이시아는 캄보디아의 최대 투자국 중 한 곳으로 금융업 초석 투자자이며, 지난 2014년 6억 800만 달러의 FDI를 캄보디아에 제공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의 대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천연고무, 직물, 의류, 시리얼, 화학약품, 화학제품, 야자수 오일 등이며, 말레이시아의 대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은 음료, 담배, 운송 장비, 가공식품, 화학약품, 화학제품, 기계류, 가정용 기기, 부품 등이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다

2016년 8월 9일, 프놈펜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Cambodian Chamber of Commerce)와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는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의 협력 관

계를 더욱 굳건하게 해줄 MOU를 체결했다. MOU는 양국 간의 정보 교환, 무역 진흥 활동, 기업 선교, 능력 배양 등 협력을 중심으로 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의 CEO Dzulkifli Mahmud는 현재의 거래량은 적지만 앞으로 발전할 여지가 많다고 전했으며 또한 말레이시아의 기업들은 건설업, 정보통신기술, 헬스 케어, 제조업 등의 분야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전했다. Dzulkifli Mahmud는 또한 “캄보디아는 EU와 미국에 관세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세 특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말레이시아의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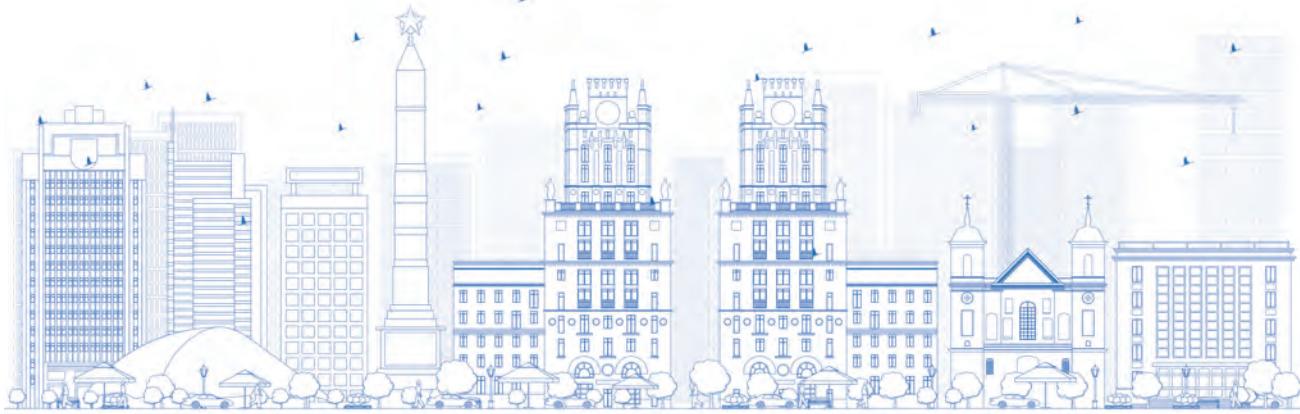
한국의 대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은 외국인 투자 진출 기업에서 생산하는 의류와 천연 고무, 농수산물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및 석유제품, 직물, 섬유,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전기·전자 제품, 담배, 의약품, 철강 제품 등이다. 한국의 대캄보디아 수출품목 중 전자기기, 음료, 담배가 말레이시아의 대캄보디아 수출품목과 유사하다. 세 가지 품목 모두 현재 한국이 앞서는 상황이며, 특히 전자기기의 경우 거의 10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앞서고 있다. 이번 캄보디아·말레이시아의 무역협정으로 말레이시아의 대캄보디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두 국가의 협정으로 캄보디아 업체와 말레이시아 업체를 연결시켜주는 정규적인 세미나,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캄보디아에 투자 유치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는 건설, ICT, 헬스 케어, 제조업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무역량을 매해 10%씩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캄보디아·말레이시아 무역협정으로 인해 건설업, 정보통신기술, 헬스케어, 제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의 대캄보디아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Ecuador]

WTO 가입 준비에 열 올리는 벨라루스



계획경제 국가 벨라루스

벨라루스 정부자료에 따르면, 벨라루스 국내 제조기업 중 약 70% 가량이 정부 관리 하에 있는 국영기업이다. CIS 역내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제조기반이 우수한 벨라루스는 역내 경제동맹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WTO 가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벨라루스는 계획경제 시스템이 경제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 운영원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의 민간자본이 벨라루스에 투자할 경우, 외투기업은 경영활동에 있어 정부의 직간접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부분이 국가 리스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후하다.

WTO, 경기침체 국면 타개를 위한 탈출구

EEU 멤버이자, 관세동맹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이미 WTO에 가입한 이상, 벨라루스만이 WTO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더욱이, 러시아 경제가 고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의 경제원조(차관 제공 등)가 예전 같지 않아, 경기침체 국면을 타개할 새로운 출구전략이 절실했던 상황이다. 올해 들어 WTO 가입에 열을 올리는 벨라루스의 태도 변화에는 이와 같은 배경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통해 유입되는 외국 산(유럽, 중국, 한국 등) 제품으로부터 자국산 제품을 방어하는 것도 조만간 한계에 다다를 것을 벨라루스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는 오히려 WTO 가입을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 활성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WTO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과의 양자 협상이 우선 타결돼야 하는데, 벨라루스는 WTO 가입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일부 CIS 국가에 편중된 대외경제 관계를 탈바꿈시키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벨라루스는 현재 우리나라와 양자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기업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의 깊은 관심과 협력이 요청된다.

시사점

WTO 미가입 국가인 벨라루스 입장에서 외투유치뿐 아니라, 대외교역 및 경제운영 전반에 있어 자국기업 보호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WTO 가입을 추진한 이상 앞으로는 기존과 같이 노골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과 벨라루스 양국 간 교역규모는 채 1억 달러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벨라루스 수출과 수입은 각각 4,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물론, 러시아 등을 통한 우회수출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벨라루스 수출은 1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나라의 대외교역에 있어 벨라루스의 존재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벨라루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WTO 가입이 과연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하지만, WTO 가입을 위한 과정에서 한·벨라루스 양국 간 경제 교류가 과거보다는 한층 더 격상된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❷

글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관세청에서 주최한
2016년 하반기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에 참석한
심사단과 세관직원들이
시상식이 끝난 직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뉴스: ① 2016년 하반기 원산지검증 정보 분석 경진대회

수입기계 원산지부터 기계류 품목분류 오류까지 다양한 사례 공유

국내에서 FTA 체결국 및 활용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FTA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원산지검증을 위한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원산지검증 정보 사례를 공유하고, 검증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하반기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①특혜관세 적용 요건 위반', '②원산지 우회수입을 위한 부정특혜 위험', '③소비재·농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원산지 의심품목' 등 다양한 분야에 출품된 총 30편의 사례 중, 서면심사를 거쳐 엄선된 총 12편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최우수상'은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원산지를 심도 있게 분석한 인천세관 손애란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필리핀산 전자제품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우려업체를 분석한 대구세관 김동규 관세행정관과, 역외산 견과류에 대한 원산지 위반 사례를 분석한 국제원산지정보원 배철한 연구원이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말레이시아산 가전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사례를 분석한 서울세관 김정숙 관세행정관, 기계류 부

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 사례를 분석한 평택세관 조자훈 관세행정관과 캐나다산 의류제품의 원산지위반 사례를 분석한 인천세관 김경아 관세행정관이 선정되었다.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 직원의 검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이는 FTA 원산지검증 업무가 방대한 국제협정의 이해와 정확한 원산지 기준 파악 등 고난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면, 다른 관세업무 분야에 비해 새로운 업무 분야로서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원산지검증을 위한 분석기법을 공유하고, 불법·부정 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우리 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❶

관세청 뉴스: ② 중국관세율 알림표 이용

중국 수출, 관세율 비교 후 저세율 활용 전략 필요

관세청은 지난 9월 15일 중국이 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이하 ITA II)¹에 따라 201개의 품목군(중국 세번으로 484개 품목)의 실행관세율을 인하했다. 중국의 최저세율 확인 편의를 돋기 위해 관세청 FTA 포털에서는 ITA II가 포함된 '중국관세율 알림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ITA II로 이미 무세화된 218개 품목은 제외하고, 전기·의료·계측기기 등 266개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3~7년 내² 연차적으로 완전 철폐된다. 대중국 수출 기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잠정세율 등 의 관세율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유리한 세율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한·중 FTA 체결 시 양허 제외(관세인하 특혜 제외)된 24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발효 2년차 FTA 관세율보다도 낮게 인하된 품목이 139개로 정보기술(IT)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에 유리한 관세 환경이 조성되었다. 예를 들어 위성TV 수신 셋톱박스(중국세번 85287110)의 경우 FTA 특혜가 없는 품목이었으나, 이번 ITA II 세율이 적용되어 30%인 세율이 2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세관에 다양한 중국 관세율 가운데 유리한 세율을 묻는 문의가 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ITA II 세율이 포함된 「중국관세율 일람표」를 전국의 수출입 기업지원센터에 배포하고,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을 통해 제공한다. 이 표를 통해 품목별 적용 가능한 중국의 최저세율과 시기별 최저세율 확인이 가능하다.

[예시1]

중국으로 카스테레오(중국측 HS코드: 85272100, MFN 15%)를 수출하는 경우

→ FTA 세율(13%)보다 낮은 ITA II 세율(11.3%) 적용이 유리

[예시2]

중국으로 편광판(중국측 HS코드: 90012000)을 수출하는 경우

→ 2016년에는 잠정세율(6%)이, 2017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세율(5.6%)이, 2017년 하반기에는 ITA II 세율(5.3%)이, 2018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세율(4.8%)이, 2018년 하반기에는 ITA II 세율(4.0%)이 유리

1

정보기술협정(ITA):

세계무역기구(WTO) 주도로 정보통신제품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정
(97년 ITA I 발효) →
ITA II 타결('15년)로 HS 6단위 기준
총 201개 품목 관세 즉시철폐 또는
최장 9년간 균등 철폐

2

3년 내 철폐(113개 품목), 5년 내 철폐(103개 품목), 7년 내 철폐(50개 품목)

3

최혜국대우(MFN) 세율:

WTO 회원국 간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세율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세율: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관세청 관계자는 "대중국 수출기업은 다양한 중국관세율 가운데 '기업에 유리한 세율'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단, ITA II 일부 품목은 정보화 기기 규격에 해당되는 물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 규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❶

잠정세율:

중국에서 787개 품목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적용하는 관세율

카툰 안종만

베트남과 뉴질랜드 FTA, 수출 1등 공신!





KOREA-NEW ZEALAND/ KOREA-VIETNAM FTA 1st Anniversary

한·베트남 FTA 발효 1주년 보고서

베트남의 새로운 수출입법

한·뉴질랜드 FTA 1주년 성과와 시사점

글 변상현(KOTRA 호치민 무역관)

사진 한국경제신문

2017년부터 3년차 양허 스케줄에 따른 FTA 혜택의 확대에 따라 한·베 FTA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한·베 FTA 활용률의 지속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베트남 FTA 발효 1주년 성과와 시사점

소비자시장에 대한 한·베 FTA 효용 점차 높아질 것

한·베트남 FTA(이하 한·베 FTA)는 양 국가의 산업발전과 민간교류에 대한 큰 기대와 염원 속에 지난해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다. 기존 한·아세안 FTA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는 한·베 FTA는 양 국가의 산업·투자 측면에서의 업그레이드뿐 아니라 민간교류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발효 1주년을 불과 한 달여 남겨두고 있다. 이에 발효 일주년을 기념하여 한·베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베 FTA는 기존 한·아세안 FTA 상품 양허를 토대로 추가 시장개방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은 수입액 기준 94.7%(+3.0%), 베트남은 92.4%(+6.1%)의 관세를 추가로 철폐 하였다. 이전 한·아세안 FTA의 양허수준을 높이고 원산지 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수출 유망품목 위주로 양국 간 무역 확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한·베 FTA가 발효된 2016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약 15.3%의 성장으로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잇고 있다. 세부적인 수출 유망품목으로 FTA 발효 전부터 기대되었던, 가정용전기기기(HS:8509)의

경우 22.2%, 기초화장품류(HS:3304)의 경우 35.1%로 전년 대비 성장한 것으로 무역통계가 집계되었다.

2017년부터 실제 관세혜택 증가

또한 한·베 FTA 양허 스케줄에 따라 내년(2017년)부터는 한·베 FTA 3년차 양허 스케줄을 적용받게 되어, 1, 2년차에 관세혜택을 받지 못했던 물품들 중에서 추가로 FTA혜택을 받는 품목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양허 스케줄에 따른 FTA 혜택의 확대에 따라 한·베 FTA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

며 이는 한·베 FTA 활용률의 지속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 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양 국가의 교역규모 증대에 있어 한·베 FTA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베트남 간의 교역규모가 증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FTA 활용률은 아직까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로 FTA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는 분야는 소비재이지만,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에서 소비재의 비중은 8%로 집계되어 낮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까지 베트남 소득수준이 낮아, 베트남이 소비시장으로서의 이점보다는 생산기지로서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대베트남 수출의 주요 품목은 원부자재, 기계·설비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은 베트남에서 무관세품목이거나, 면세제도를 활용하여 수입되기 때문에 FTA 활용이 거의 없으며, 따라서 전체 수입에서 FTA 활용률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 소비재시장은 빠른 성장 중에 있으며,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베트남 소비재 시장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소매유통시장은 매년 평균 10% 이상 지속적인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연평균 6~7%의 경제성장률, 가치분 소득 증가에 따른 구매력 향상, 소비성향이 높은 15~65세 인구의 높은 비중에 기인한다. 앞으로 베트남 소비재시장에 대한 한·베 FTA의 효용과 활용이 높아질 것이다.

발효 초 FTA 활용 애로사항

베트남의 불투명한 통관관행으로 인해 FTA 활용 애로사항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베 FTA 발효초기, 세관에 명확한 FTA 적용에 관한 세부지침이 없어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가 다른 FTA 원산지증명서에 비해 지연처리 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원산지증명서가 전자발급된 경우 발급기관의 인장 불인정, 확인자 개인서명 확인불가 사유로 불인정 등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의 불인정 사례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발생으로 한·베 FTA 발효초기인 2016년도에는 발효 9년차인 한·아세안 FTA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베 FTA 발효 1주년을 앞둔 현재에도 한·아세안 FTA와 관세혜택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익숙한 기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으며, 심지어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 중에서 한·베 FTA 발효를 모르는 기업들도 있었다. 따라서 기업들에 대한 한·베 FTA의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FTA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FTA 활용

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원산지증명서(한·베트남FTA 및 한·아세안 FTA)가 베트남 세관의 통관 시 상기와 같이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세관 산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문제 원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베트남 FTA 사후적용 거부지침 대응시례

호치민 무역관에서 발굴한 FTA 활용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지난 9월 14일 베트남 재무부의 FTA 사후적용의 새로운 지침 발굴 및 대응활동이 있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베트남이 발효한 FTA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에만 FTA 관세혜택이 가능하며, 수입신고 이후 사후적용에 따른 관세환급을 거부하였다(단, 한·베 FTA 경우는 사후적용이 계속해서 가능).

호치민 무역관에서는 동 지침 발표 후 발 빠르게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에 통보하여 베트남 정부에 대해 조치할 수 있게 하여, 10월 4일자로 베트남 재무부에서 지침의 조기 수정 발표를 이끌어 내었다. 이 수정지침은 기존의 FTA 사후적용의 전면 거부 방침을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내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도 앞으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내에 FTA 사후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FTA 사후적용 방침의 변경으로 수입일로부터 1년간 사후적용이 가능한 유일한 FTA는 한·베 FTA만 남게 되었다. 사후적용 1년간 가능한 한·베 FTA는 기존 한·아세안 FTA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10여 개 FTA에 비해 한·베 FTA의 큰 강점이 되었다. 앞으로 한·베 FTA는 이러한 사후적용의 안정성 확보를 토대로 한·아세안 FTA를 빠르게 대체해 갈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이 체결한 다른 FTA에 비해서 높은 활용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호치민 무역관은 FTA 활용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는 FTA 상담뿐만 아니라 기업의 애로사항, 비관세무역장벽 등을 조사하고,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월 초 개소 시점과 비교하여, 현재 상담건수가 대폭 증대되고 있어, 기업들의 한·베 FTA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동 센터는 지속적으로 FTA 활용 상담, 베트남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명회 개최, 베트남 내 진출 한국기업의 밀집 지역대상 이동상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들의 FTA 활용 도우미로서 한·베 FTA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글 김은진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베트남의 새로운 수출입세법

근로자 출퇴근 목적의 24인승 이상 차량 면세대상에서 제외

베트남이 10년 만에 공포한 새로운 수출입세법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 베트남 정부는 새 법문에 근거해 수출 관세율표, 15인승 이하 중고차량에 적용되는 종량세¹ 및 복합세², 저율관세할당³ 품목을 명시하기도 했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이 정리한 베트남의 신 수출입세법 중 주요 개정내용과 규정을 일부 소개한다.

1
폐상품의 수량 또는
증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시사상식사진)

2
2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관세율, 상품가치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증가세율에 상품가치와는
무관하게 품목당
화폐액으로 표시되는
증량세가 더해지는
형태(외교통상용어사전)

3
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시사경제용어사전)

수입 제조품의 기본 관세율 변화

베트남 정부가 실시하는 최혜국 관세율과 특혜 관세율 수혜는 베트남을 최혜국 또는 무역협정에 따라 특별 대우하는 국가에서 수출했다는 증명 하에 비관세 지역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한다. 한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 협정(FTA)과 한·베트남 FTA를 체결한 상태이므로 대부분의 한국산 수출품은 두 무역협정 세율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무역 구제조치 강화

무역 구제조치는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관세를 포함하며 해당 관세들과 전반적인 적용원칙, 적용기간에 관련된 조건을 규제하고 있다. 무역 구제조치와 관련된 법적 기틀은 베트남 산업통상부 관리 하에 이미 마련돼 있어서 새롭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구제조치가 점증하고 있어 세부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베트남이 발동한 무역 구제조치는 2009~2016년 8월까지만 해도 7건으로 미미하지만 그 중 4건은 작년과 올해 입안된 것이다. 현재까지 베트남의 무역 구제조치는 일부 한국산 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7건의 조치 중 5건에 대해 구체적인 관세장벽이 구축됐는데 한국산 식물성 제제유(식용유), 화학조미료, 스틸 빌렛, 봉강과 철골, 코팅 강판에 세이프가드 관세 3건, 반덤핑 관세 1건이 각각 부과

됐다. 7월부터는 한국산 도금 강판에 세이프가드 관세가 잠정 부과되고 있다.

수출입세 계산법 보완

새 법령은 ①세율 ②종량세 ③복합세 등 3가지 관세 계산법을 명시하고 있다. 3가지 관세 계산법은 법령 개정 전부터 재무부에서 도입한 것이다. 복합세의 경우 이전 법령에 명시됐던 것은 아니지만 법령과는 별개로 종량세 계산법과 함께 15인승 이하 중고 차량에 적용돼왔다. 15인승 이하 중고 차량에 대한 수입 세금은 전과 같다.

수입면세 가능 보완

이번 새 법령에 추가된 수입세금 면제 가능 건에 '수출용 제조상품을 위한 자재 수입'이 포함됐다. 베트남 재정부가 각 지역 세관에 지시한 내용에 따르면 자재, 공급품, 부품, 반가공 제품, 수출용 상품 포장을 위한 완성 포장품 또는 포장자재, 수출품 보관을 위한 부품, 샘플에 수입 면세 자격이 주어졌다. 새 법령은 임가공 자재로 수입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임에도 환급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합리함을 보완했다. 이 덕분에 수출용 제품 제조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쉬워져 특히 의류와 수산물 분야 수출기업들이 세법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새로운 수출입세법을 공포했다. 무역구제 증가, 기본관세 변경 등 개정된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



납세기한 단축

납세기한 규정이 강화됐다. 신 수출입세법에 따라 세금 징수 대상이 되는 수출입업자는 통관이나 상품 출고 전에 즉시 납세 의무가 있다. 신 수출입 세법에서는 신용기관을 통해 납세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세관 신고일자로부터 최대 30일까지이며 기한을 초과하면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납세기한 연장 기회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또는 '세관 인정 우선기업(priority enterprise)'에게 주어진다. 납세기한이 지연되는 경우 AEO 기업은 수입품 통관 또는 상품 출고 후 다음 달 1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AEO 관련 규정은 구 법문에는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하위 법령에 새로 명시됐다. AEO 기업에 최소로 요구되는 연간 총 무역수익은 1억 달러, 연간 총 수출수익은 4,000만 달러다. 현재 AEO 공인 기업은 54곳뿐이다. 전자, 의류, 신발, 수산물 가공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 중 65%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그 중 한국과 일본 기업이 6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AEO 체결을 논의 중이다.

24인승 이상 차량 수입 면세대상 제외

과거와 최근의 법 모두 '투자 장려 사업'의 고정자산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면세대상으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근로자 출퇴근 목적의 24인승 이상 차량은 더 이상 면세대상이 아니다. 이로써 한국산 10인승 이상 차량의 베트남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10인승 이상 완성차량(CBU)의 상위 수출국은 중국, 일본, 한국이다. 2014년 한국 베트남 10인승 이상 완성차량 수출액은 1억 5900만 달러였다. 더불어 호텔, 사무실, 임대 및 주거 목적 아파트, 무역 및 기술 서비스센터, 백화점, 골프장, 리조트, 스포츠센터, 레크리에이션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 건강진단 및 치료, 교육, 문화, 재무, 은행, 보험, 회계감사 및 자문 사업의 상수도, 에어컨 및 환기, 화재 예방 및 방화, 수처리, 엘리베이터, 세탁, 경비, 의료기구, ATM 관련 장비나 설비에 수입 세금이 부과된다.❶

글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뉴질랜드 FTA 1주년 성과

한·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 대뉴질랜드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

장기간의 세계 경제침체와 국내 무역액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수출입에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한·뉴질랜드 교역성과는 발효 이전부터 상호보완적 협정으로 인식되었던 한·뉴질랜드 FTA가 앞으로도 국내의 무역 증진에 바람직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한다.



바람직한 상호보완적 FTA의 시작

2006년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한·뉴질랜드 간 FTA 연구 및 회의 개최에 합의한 이래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 2015년 12월 20일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었다. 한·뉴질랜드 FTA는 뉴질랜드가 이미 다수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한국과 함께 RCEP에도 참여하고 있어 우리의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가 가능하며,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활용한 무역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시장에서 많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FTA 특혜 관세를 향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 기업들이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농림수산협력, 인력진출 활성화 등의 기회를 확대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한·뉴질랜드 간 상반기 교역 현황, 대체로 맑음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 2016년 7월 기준으로 뉴질랜드에 대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8.3억 달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8% 감소한 6.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혜택품목으로는 수출에서 건설중장비가 전년 동기 21% 증가한 2,452만 달러, 승용차용 타이어가 23.5% 증가한 592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에서는 알루미늄괴가 33.5% 증가한 2,425만 달러, 냉동쇠고기가 7.3% 증가한 5,610만 달러를 기록했다. 뉴질랜드의 수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6월 기준) 뉴질랜드의 대한국 총 수출액이 전년 동기 3% 증가했으며, 특히 육류, 체리, 와인 등의 식품과 음료 분야는 전년 동기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 기준 한국과 뉴질랜드 총

한·뉴질랜드 교역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7
수출	금액	1,104	1,465	1,491	1,730	1,263	826
	증가율	20.2	32.7	1.7	16.1	27	10.6
수입	금액	1,474	1,339	1,395	1,526	1,224	639
	증가율	25.4	9.2	4.2	9.4	19.8	17.8
무역규모		2,578	2,804	2,886	3,256	2,487	1,465
증가율		23.1	8.8	2.9	12.8	23.6	3.9
무역수지		370	126	95	204	39	187

(만불, 전년 동기 대비 %)

2016 상반기 한·뉴질랜드 10대 교역 품목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휘발유(1331)	165	3.7	원목(0311)	174	7.4
2	승용차(7411)	161	3.7	낙농품(0243)	92	0.8
3	경유(1332)	131	66.1	가축육류(0221)	73	6.1
4	철도차량(7441)	32	87.8	기타석유화학제품(2190)	41	72
5	합성수지(2140)	26	6.1	알루미늄괴및스크랩(6211)	30	5.6
6	건설중장비(7251)	25	21	과실류(0116)	30	3.6
7	화물자동차(7412)	18	21.4	펄프(2511)	26	30.3
8	제트유및등유(1333)	17	87.7	동물성한약재(0233)	20	92
9	무선수신기(8125)	16	422.1	제재목(0312)	16	23.7
10	석도강판(6136)	12	56.8	단백질류(0245)	15	20.1
	총계	603		총계	517	

(백만불, 전년대비 %)

교역량은 4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동기간 한국이 타 국가와의 수출입 실적이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얻은 값진 성과라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이며 한·뉴질랜드 FTA가 양국 시장에서 한국과 뉴질랜드의 기업들이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은 사실을 증명한다. 또한 뉴질랜드 주요 물품들은, 한국의 제조업자에게 필수적인 원자재로, FTA를 통해 관세가 계속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앞으로 더 큰 가격 경쟁력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 협력,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뉴질랜드는 FTA 체결 이후 상품 교역 증가는 물론 교육과 농가, 인적자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뉴질랜드 제스프리사와 제주도 농가의 협력도 좋은 예 중 하나다. 계절이 반대인 한국과 뉴질랜드의 환경을 이용해 제스프리사가 서귀포시와 업무 협약을 통해 품질관리 방법과 재배기술을 전수해 뉴질랜드에서 키우기 생산되지 않는 계절 동안 제주도에서 키워를 수확했다. 또 다른 사례는 뉴질랜드산 재료를 이용해 한국기업에서 제조·유통하는 특수분유이다. 이 제품은 중국시장 내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청정한 환경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건강한 뉴질랜드산 원재료를 이용해 수준 높은 제조기술을 겸비한 한국 기업이 생산했다는 사실이 식품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중국 소비층에게 신뢰를 주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그 밖에 남극기후변화, 뼈 재생 분야, 4D 흰엔터테인먼트 기기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흥미로운 협력 작업을 진행했다.

2017년 1월부터 3차 관세 인하 개시

FTA가 발효된 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만큼 FTA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초반 성과를 놓고 볼 때 FTA가 두 나라의 기업과 교역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뉴질랜드 FTA 1주년을 앞두고 각국의 기업과 관련 부서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오는 11월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질랜드 대사관과 상공 회의소가 주최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가 11월 17일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며, 11월 22일에는 오클랜드에서 한국 대사관과 한·뉴질랜드 기업인 협의체에서 주최하는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발효 3년차를 맞이하는 오는 2017년 1월부터 한·뉴질랜드 FTA 3차 관세 인하가 시작된다. 이는 앞으로 양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두 국가 간 교역에 더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❶

글 최종진(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우리만의 고유 브랜드를 향상시키며, 우리 청년들의 진출 영역을 확장시키는 새로운 '경제 기회'이다.



한·뉴질랜드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경제영토 넓히고, 우리 브랜드 향상시키는 새로운 기회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어느덧 일년을 맞았다.

FTA 발효 12일만에 2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면서 양국은 초기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었고, 이런 긍정적인 여파는 2016년 3분기까지 이어졌다. 2016년 3분기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극심한 수출 부진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수출증가는 메말라가는 한국 경제에 단비가 되어주고 있다.

관세인하로 관련 품목의 수출 증가세와

한국 상품에 대한 높은 관심

2016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중 FTA 관세 효과를 보는 것은 축전지, 타이어 그리고 세탁기 등이다. 이러한 품목들은 관세인하 효과로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냉장고, 건설중장비 등이 3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어, 우리나라 수출동력에

더욱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뉴질랜드 수출품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자동차, 석유제품 등이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FTA 관세인하효과가 전체 수출 지표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취약한 뉴질랜드로의 수출 확대를 계기로 서비스, 투자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확대가 전망된다.

한·뉴질랜드 FTA 관세양하 주요 품목 수출 증감 현황

(단위 천 달러, %)

품목	FTA 양하	2015년		2016년(3분기)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건설중장비	3년 철폐	40,920	-45.5	35,156	27.3
축전지	즉시 철폐	18,775	-0.9	14,473	-2.4
기타철강금속제품	5년 철폐	12,140	22.4	12,906	51.9
타이어	즉시 철폐	13,479	-32.9	11,916	20.7
아연도강판	5년 철폐	14,664	20.1	10,535	-10.4
도금강판	5년 철폐	4,625	-10.4	6,806	147.0
면류	즉시 철폐	4,454	2.1	3,711	12.7
냉장고	3년 철폐	5,091	-6.1	2,840	-26.5
냉연강판	5년 철폐	5,390	-20.6	2,655	-29.5
세탁기	즉시 철폐	938	-25.4	1,136	74.5

주1 기준 무관세 품목 제외 주2 MTI 4단위 기준 자료원 무역협회

또한 FTA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과 현지 바이어의 높은 관심 등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도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6월 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비자 수출대전'에 뉴질랜드 최대 유통업체인 푸드스터프(Foodstuffs社)를 비롯해 주요 바이어 8개사가 대거 방한하여 한국 소비자 기업들과 1:1 구매상담을 진행하였다. 1년 전에 개최한 동일 행사에 참가한 뉴질랜드 바이어가 1개사에 불과했었던 점을 비교해 보면, 한·뉴질랜드 FTA로 인한 현지 바이어들의 높아진 관심과 한국의 위상은 향후 우리 제품의 뉴질랜드 시장진출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청년들의 뉴질랜드 진출 기회 확대

FTA 체결 효과는 제품 분야에서의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정보기술(IT), 인프라 산업 등에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의장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주목해 볼만한 점은 '워킹홀리데이'이다. 실제로 한·뉴질랜드 FTA에서 인적교류에 대한 부분이 별도 서한으로 합의될 정도로 인적 교류의 활성화는 중요도 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양국은 워킹홀리데이 분야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연간 쿼터 인원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기존의 '동일고용주 3개월 제한'에서 '종신고용부분만 제한'으로 근무조건을 완화했다. 한국 청년의 뉴질랜드 진출을 위한 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현지 기업들이 한국 워킹홀리

데이 청년 채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채용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원 확대가 실제 신청자 수에 비해 충분하지 못해 현지 구인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쿼터 인원을 점차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으며, 한국 청년들이 단순 노동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이뤄낸 성과

다음달 12월은 한·뉴질랜드 FTA 발효 1주년이다. 1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대뉴질랜드 수출 전년동기 대비 8% 성장'은 수출 부진의 높에서 시름하던 우리 수출산업에 단비가 되어주었고, 한국산 상품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의 확대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기여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등의 인력교류 활성화는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한국 청년들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FTA는 이처럼 단순히 양국 간 관세인하를 통해 교역 증가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우리만의 고유 브랜드를 향상시키며, 우리 청년들의 진출 영역을 확장시키는 '기회'인 것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뉴질랜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꼼꼼하고 지혜로운 협력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정리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FTA 정보 제공 포털사이트

FTA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와 관련한 자료는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FTA 기본 정보는 물론 원산지관리, 기업 활용, 해외 진출, 인력 양성 등 FTA 활용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각 포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원하는 정보만 쑥쑥 골라 쓰자!

FTA가 무엇인가요?

FTA강국코리아(www.fta.go.kr)

FTA의 A부터 Z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웹사이트로 FTA의 개념, 주요내용, 발효국가는 물론 서명·타결국가, 협상 중 국가, 협상재개여건조성국가 등의 우리나라 FTA 현황과 협정문, 전세계 FTA 체결현황 등이 잘 정리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WTO, DDA, APEC, 비관세장벽 등 세계통상에 관한 정보를 비롯해 FTA 활용, FTA 용어, 관련 기고문과 연설문 등 참고 자료가 많아 FTA를 처음 접하거나 전반적인 무역과 통상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또 FTA 지역별활용센터와 1380콜센터 그리고 다양한 FTA 활용유관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어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때도 편리하다.

〈함께하는FTA〉의 과월호 자료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FTA란무엇인가 #FTA현황 #WTO정의 #FTA용어 #FTA기고문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합니다

관세청종합 솔루션 YESFTA(www.customs.go.kr)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FTA포털로 원산지기준,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증명서발급 그리고 수출입세율 등 원산지검증을 비롯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FTA 활용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지역 세관에서 진행하는 FTA 교육일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산지규정, 원산지관리 등의 동영상 강의도 제공한다. '차이나-info' 카테고리가 따로 마련되어 한·중 FTA에 관한 문의를 종점적으로 다루며, 관세청 FTA관련 소식지 FTA e-letter를 신청하면 FTA 민원상담사례, 비즈니스 모델 등 관세청의 생생한 정보와 소식을 매일로 받아볼 수 있다.

#원산지관리 #기업FTA활용정보 #FTA경진대회사례모음

#한·중FTA #FTA사이버강의 #FTA교육일정

해외진출 준비는 여기서 트레이드 내비(www.tradenavi.or.kr)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문 무역정보를 제공하는 종합포털사이트로 기본적인 FTA 정보는 물론 각종 수출장벽, 반덤핑규제, 비관세장벽 등 무역 규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대응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해외 전시회 및 해외기업, 유망분야, 한류동향 등 해외시장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다. 또한 원하는 국가 정보만 골라볼 수 있는 '국가별 맞춤정보서비스'와 품목별로 나라별 HS코드와 관세를 체크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해외진출 #무역규제 #대응사례 #수출지원 #해외전시정보 #해외마케팅 #시장보고서

FTA 원산지관리 전문가를 위한 교육자침서 FTA PASS(www.ftapass.or.kr)

FTA 활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산지관리를 위해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관세청원산지관리시스템 포털이다. 거래처, 물품정보, 자재명세서, 생산공정 등의 기준정보부터 구매단가, 수출신고서 등의 거래 정보, 판정관리, 각종 서류 관리법에 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품목별인증수출자, 업체별인증수출자 등 인증관리를 도와주며 원산지결정기준, HSK 조회, HS 연계표, 그리고 협정별 서식과 자료도 검색해볼 수 있다. 현장지원, 정기교육, 협력사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검증대비 #인증수출자요건 #인증수출자신청 #조회서비스 #간편발급서비스 #서류관리

인터넷으로 무역 및 FTA 관리를 한 번에 UtradeHub(www.utradehub.or.kr)

무역업체들의 업무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전자무역 단일창구 포털이다. 별도의 설치과정 없이 마케팅, 상역, 외환, 통관, 물류, 결제까지 모든 무역 업무 프로세스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UtradeHub에서 제공하는 'FTA Korea'는 FTA원산지판정, 유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사후검증대비 자료보관서비스까지 제공해준다. UtradeHub 가입 신청 시 FTA Korea 서비스 '사용'을 선택하면 업종, 업체규모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무역 #원산지관리시스템 #중소기업 #사후검증대비자료보관 #입증서류관리

전문가에게 듣는 오늘의 세계 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FTA 포털(www.kiep.go.kr)

'KIEP'은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연구 분석하기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연구원들의 다양한 연구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다. 메가 FTA 완성전략, 디자간무역제도 활성화와 G2국가의 경제 심층 분석, 우리나라와의 경제관계 확대 등 세계경제와 관련한 심도 있고, 다채로운 시각의 보고서 및 칼럼들이 업로드된다. 또한 매달 'East Asian Economic Review'를 자체적으로 발행해 동아시아 경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경제정책연구원 #경제보고서 #세계경제통계 #언론칼럼 #회의자료 #세미나

글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TPP 긴급 진단으로 되돌아 본 메가 FTA 시대 대응전략

RCEP과 한중일 FTA 적극 참여하고 TPP의 행보 면밀히 관찰해야

지난 9월 말 산업부 주최로 <TPP 전략포럼>이 개최되었다. 메가 FTA 시대 초석이 될 협정인 동시에 우리도 추후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어 정부가 전략 수립에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족한 포럼이다. 오바마 정부의 레임덕에 맞물려 지지부진해진 TPP지만 이를 통해 TPP협정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다가올 메가 FTA 시대의 대응전략에 대해 고민해보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TPP

TPP협정은 현재 총 12개국이 참여 중이며 지난 12월 협상이 타결되었고, 올해 2월에 정식 서명을 마친 상태다. 이후 각 국은 자국 비준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연내 비준을 목표로 박차를 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 내 TPP 비준을 끝내겠다는 결심이 아주 단호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역작으로 TPP를 꼭 넘기겠다는 취지다. 이에 미국 무역 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앞서 TPP 협상 타결 즈음 통과된 무역촉진법안

(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에 따라 TPP 협정 비준 동의안 제출 3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만 하는 행정이 행계획(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SAA)의 초안을 지난 8월 의회에 일찌감치 제출한 상태다. 연말 레임덕 기간 내에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역시 아베 정부의 행보가 거리낌 없다. 이미 지난 9월 말 방미 중 회동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일 양국 정부가 TPP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일본 역시 국내비준을 연내 완료한다는 의미다. TPP 협정 조문상 정식 발효를 위

1

TPP 정식 발효를 위해선 적어도 2년 이내에 원서명국 전체 GDP(2013년 IMF US달러 기준)의 최소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국내비준 완료가 필요함. 미국이 60.4%, 일본이 17.7%임을 고려하면 두 국가의 국내비준 완료는 필수임.

해선 미국과 일본의 국내비준 완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¹ 이 필요조건, 충분조건의 공식을 양국이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TPP 연내 발효를 향한 희망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여론도 팽배하다. 특히 미국, 일본은 물론 TPP를 통해 많은 기대를 품었던 베트남 마저도 최근 TPP 연내비준 완료에 대한 미국 의회의 미적지근한 태도와 교역의존도가 큰 중국의 눈치로 연내 국내비준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 고민은 깊어지고 TPP 협정의 발효가 미국의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메가 FTA시대 대응전략

현 시점에서 가장 가시적인 메가 FTA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TPP와 더불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한중일 FTA,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이 그것이다. 저마다 메가 FTA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있지만 문제는 위 네가지 협정 모두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EU 간 TTIP은 과거 GATT와 WTO체제의 설립에 크게 기여했던 두 무역강국 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이유로 2013년 협상 초기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동시에 받았으나 TTIP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투자자국가소송제(ISA)의 도입과 서비스 교역 등을 제외하는 문제로 한때 좌초할 위기까지 몰렸던 바 있다. 최근 독일 메르켈 총리가 나서 협상 재개의지를 밝혀 한시름 놓았으나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렵다.

한국의 입장에선 TPP와 TTIP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만

큼 정식 참여 중인 RCEP과 한중일 FTA를 통해 적극적으로 메가 FTA시대에 동참하는 동시에 이미 공식적으로 참여의사를 나타낸 TPP의 행보를 면밀히 관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한중일 FTA는 3국간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으로 그 해답을 찾기 어렵고 주력 수출품목군이 크게 겹쳐 3국간 FTA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차 완벽한 합의를 내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태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TPP 진전으로 조급해진 중국이 참여 중인 RCEP에 보다 큰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 RCEP는 총 참여국 수가 16개국으로 TPP보다도 많고 한중일 모두가 참여하고 있어 우리에겐 한중일 FTA의 간접적 타결도 가능한 협정이다. 그러나 인도, 중국, 동남아 등 애초에 자유무역. 그리고 이를 위한 공격적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국가들이 주력 참여국 자격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다 보니 높은 수준의 협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딜레마도 함께 존재한다. 이에 한국은 그간의 FTA 협상 경험과 노하우를 잘 발휘하여 RCEP 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특히 TPP 비준 절차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과 겹치며 담보상태에 빠진 지금이 중국에겐 RCEP에 박차를 가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한국이 힘을 보탤 수 있는 여지도 크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TPP 비준완료를 촉구하고 성토한 바 있다.

FTA는 참여자들 간의 이익분배와 독식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바꿔 말하면 비(非)참여자들에게 그만큼 불이익이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메가 FTA시대는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올 전망이다. 우리는 참여 중인 협상에선 우리의 의사를 최대한 피력하고 반영시키려 노력하는 동시에 참여 고려 중인 협정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적절한 참여 시기를 포착하려는 준비태세를 늘 갖추고 있어야 한다.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고 분명 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 FTA 네트워크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성공적으로 참여해 온 우리만이 갖고 있는 경험의 자산을 활용해야하는 때는 바로 지금이다.❶

지난 12월 협상이 타결되고, 올해 2월 정식 서명을 마친 TPP협정에는 현재 총 12개국이 참여 중이다.



글 김선녀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FTA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제교역 실무자들은 수출입 국가와 품목별로 달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2016 FTA 활용 우수기업 탐방: (주)백제교역

단단한 신뢰와 FTA 활용으로 성장하는 무역 전문가

FTA는 수출자에게는 바이어들에게 돌아가는 관세혜택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여주고, 물건을 수입하는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관세 절하를 통한 비용절감의 혜택을 받게 한다. 해외에서 기계와 공구를 수입하고, 국내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무역회사 (주)백제교역은 수입과 수출 양쪽 모두에서 FTA를 활용해 어려운 통상환경을 극복해나가고 있다.

34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연간 매출액 200억을 달성하는 탄탄한 무역회사가 있다. 방전기 소모품과 패킹 원자재를 기본으로 다양한 공작기계와 공구를 수입하는 백제교역은 오랫동안 계속되는 경기침체 동안에도 내수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품질력을 내세운 국내제품으로 미국, 아시아, 유럽까지 수출 활로를 개척해내고 있다.

발품으로 얻은 단단한 신용

당산동 영등포구청역의 시끌벅적한 먹자골목을 몇 블럭 지나면 골목 안쪽 건물 2층에 백제교역 사무실이 있다. 영업사원이 빠져나가고 한산한 사무실은 언뜻 보면 작고 평범한 회사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곳은 연간 매출 200억, 삼백만 달러 수출탑 수상에 빛나는 32년의 연륜이 넘치는 무역회사이다.

1982년 건립된 (주)백제교역은 백제TS, 백제EM의 자회사와 필리핀 지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기계, 공구 등의 소모품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데, 주로 과전압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전압에서 방전이 되도록 하는 방전기 소모품과 패킹 원자재로 시작해 현재는 매우 다양한 공작기계와 공구 등을 수입하고 있다.

현재 전체 매출량의 80%는 수입, 10%는 국내 매입, 나머지 10% 정도가 수출을 차지한다. 거래국가도 매우 다양한데, 미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독일, 네덜란드 등 다양한 대륙을 넘나든다. 값싼 중국제품 때문에 내수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꾸준한 거래량으로 내수와 수출 각 분야에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제품 샘플을 수입하면, 주문 후에 꼭 현장 확인을 해요. 해외 공장으로 직접 찾아가 공장 규모나 제품 상태를 일일이 검수합니다. 오랜 시간 이런 과정을 통해 협력사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는 거죠.”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로 제품이나 시장에 대한 정보 습득이 쉬워졌지만, 빠른 정보력은 수입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무역업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 기술이 너무 쉽게 변하고, 그런 정보들이 모두에게 오픈되기 때문이다. 백제교역은 그럴수록 기본에 충실하기로 했다. 지금도 꾸준히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 해외전시회에 참가해 바이어들과 만나고 그들의 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

“저희는 표준화된 제품이 아닌 특성화된 제품이라 제품을 팔지 않으면 안돼요. 그렇게 빨로 뛰는 만큼 단순한 인터넷 정보보다 더욱 단단하고 정직한 제품을 거래처에 소개할 수 있고요.”

수출, 수입 모두에 강한 FTA 전문가

내수에 강한 백제교역이지만, 수출 역시 전체 매출에 15% 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의 검증된 제품을 구매해 미국, 독일, 중국, 아시아 국가들로 수출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가격 면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예전히 어렵지만 중국제품과 차별화된 메이드 인 코리아의 품질력을 내세운 수출 전략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가고 있다.

수출입이 주 업무인 백제교역에서 FTA는 빼 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한·중 FTA가 처음 시행됐을 때 서류도 까다롭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내용들도 많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나중에는 견본을 받아서 내용을 보관해두고,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는 식으로 진행해 실수를 많이 줄였죠.”

무역회사인 만큼 FTA 활용이 주 업무인 백제교역은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실무자들 대부분 FTA 업무에 익숙한 편이다. 자율발급인 한·미 FTA, 수출인증자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한·EU FTA 담당자가 분리되어 있고, 수출과 수입 관련 FTA 담당자가 달라 각자 분업화된 작업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FTA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와 비교할 일이 많아요. 기존 APTA의 경우 적용

되는 품목수가 적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편이었거든요. 지금은 두 가지 협정 모두 적용되는 품목일 경우 두 협정의 관세율을 비교해 더 좋은 쪽을 택하는 편이에요.”

수출, 수입 양쪽에서 FTA를 활용하고 있는 백제교역은 수출의 경우 관세 인하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어들에게 가격경쟁력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수입은 통관 시 직접적으로 관세 적용을 받게 되어 금액적으로 받는 혜택의 실감이 크다고 말한다.

“무역과 관련해 FTA는 현재 가장 큰 이슈예요. 그렇지만 원산지증명서 같은 서류가 늦어지면 통관이 빨라도 당장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아요. 또 관세사 등의 컨설팅을 받는 데 지원금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죠.”

백제교역은 매년 10% 상향을 목표로 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내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새로운 전략이나 기술이 아닌 30여 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온 저력과 연륜이 백제교역의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한다.

“저희 같은 무역회사는 신뢰와 신용이 핵심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변해도 자주 업체를 찾아가고, 좋은 물건을 보여주면서 ‘대면’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의 원칙을 고수하고,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나가려고 합니다.”

1



1 백제교역의 주요 수입제품인 방전기애 주로 쓰이는 동파이프.

2



2 다양한 종류의 동파이프를 취급하고 있으며, 직선형, 정확한 갯수 등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3



3 한·EU FTA를 위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 독일, 네덜란드 등과의 FTA 활용에 이용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재림(再臨)과 비관세장벽¹의 대두(擡頭)

신흥국들 수비적, 선진국들 공격적

미국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이어지며 대선 분위기가 점점에 달했다. 동시에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한 우려는 눈앞의 현실로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GATT와 WTO체제를 거치며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따른다. 이에 각 국은 비관세장벽을 보호무역 조치의 하나로 적극 활용하는 형국이다.

대보호무역주의의 재림: 미국發 유럽發 중국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와 새 정권을 위한 대선 흐름 속에 TPP 협정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 정권의 최후의 역작으로 TPP 발효를 위해 경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대선 후보들의 일관된 보호무역 기조 역설에 역풍을 맞아 면구스러운 처지가 되고 말았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² 과거 대공황시기에도 목격한 바 있지만 보호무역주의는 그 성격상 타 국가들로까지도 그 기조가 일파만파 퍼지는 도미노 현상을 유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일환인지 최근에는 사드 배치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국 까지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언급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WTO 체제 하 – 한국과 중국은 모두 WTO 회원국 – 무역보복이란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3조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WTO 체제에서도 국가 간 무역보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분쟁해결절차를 모두 거친 뒤 패소국이 최종 판결의 이행에 실패했을 경우에 한해서로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당장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Michelle Cini가 저서 European Union Politics에서 유럽연합의 퇴회라는 것은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그야말로 아주 극적인 시나리오 ("even (potentially) withdraw from the Union, although it seems highly unlikely that any state would take such a dramatic step.")로 평가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ATT와 WTO 체제에서 노골적인

무역보호조치는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므로, 각 국은 저마다 보호무역을 목적으로 비관세장벽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경제강국과 신흥국들 간에 그 성격의 차이가 있어 이를 잘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흥국들의 수비적 비관세장벽

신흥국들은 애초에 수입 자체를 국경에서부터 차단하거나 자체시키는 수비적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많이 활용한다.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나 기술장벽, 위생 또는 검역절차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최근 TPP로 인하여 제2의 중국, 신(新)세계의 공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베트남이 좋은 예다. 베트남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설재나 원부자재 등을 수입하려면, 베트남 세관 또는 세관원이 자의적으로 수입관세를 부과하곤 한다. 또한 베트남 내 검사기관에서 작성한 품목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 HS코드 분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베트남 관세청(본청)에서 수개월씩 회신을 주지 않거나 담당 세관이나 직원이 기준과 다른 HS코드로 분류하기도 하며 이에 따른 부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절차와 내용에서의 일관성을 크게 결여시키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된다.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도 한국과 베트남 간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점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직인 색깔의 차이(한국은 파란색, 베트남은 빨간색)로 원산지 인정이 거부된다거나 인보이스 상의 포장단위와 원산지 증명서 상의 포장단위가 다르다는 이유로도 수입이 거부당하기도 한다. 화장품과 같은 유행에 민감한 상품에 대해서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기술장벽을 활용, 제품등록에

¹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하고 무역과 관련해 장애를 유발하는 모든 장벽을 말하며, 기술규정 및 표준, 위생 및 검역절차, 통관절차, 정부조달,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나 이를 정확하게 정의, 분류하는 국제적, 객관적 기준은 없다.

² 제23조 〈다자간체제의 강화〉 조항에서는 회원국간 의무위반, 이익 무효 또는 침해 등이 발생할 시에 이 양해의 규칙과 절차(분쟁해결제도를 말함)에 호소하여 해결할 것을 촉용하며 일반적 보복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그 조치를 취하는 행위 주체와 종류가 다양하고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집된 정보도 많지 않아 대처가 어렵다.

시간을 낭비하거나 상위 등급의 임상실험을 거쳤음에도 베트남 내 임상실험을 재요구하는 등 소모적 행위가 많다. 중국 역시 각 지방별 세관(중국 현지에선 해관)의 품목 분류 및 과세가격 산정 등이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고 통관과정에서의 납품지연과 계약 파기도 목격할 수 있다. 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역시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 손꼽히며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는 분위기였으나 한때 과도한 검역기준으로 우리 김치, 젓갈, 조미김 등의 대 중국 수출길이 하릴없이 막혔던 기억도 아직 생생하다.

선진국들의 공격적 비관세장벽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엔 비관세장벽의 공격성이 뚜렷하다. 특히 미국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와 같은 무역구제관련 장벽의 최다 활용국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이미 WTO 협정 비합치판정을 받은 제로잉을 통한 덤팡마진 산정방식은 악명 높고, 최근에는 다행히 우리의 승소로 귀결되었긴 하지만 타깃덤팡 문제로 WTO 분쟁해결제도에 제소되었던 바 있는 미국이다. 해당 사건의 시작에는 우리 철강과 세탁기 등에 부과한 반덤핑, 상계관세, 예비반덤핑관세 등이 있으며 이를 미

국의 보호무역주의 초장(初章)으로 이해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작년 10월 발표한 신통상투자전략보고서에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을 통해 교역상대국들의 불공정무역관행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노골적으로 밝히더니 작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산 전기기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올해에도 중국산 중강판과 열연강판에 13.2%에서 73.7%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며 중국과 크게 통상마찰을 겪은 바 있다.³

유비무환 정신으로 비관세장벽 대응해야

비관세장벽은 그 조치를 취하는 행위 주체와 종류가 다양하고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집된 정보도 많지 않아 대처가 어렵다. 따라서 가시적인 피해가 목격되면 정상회담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한 해결, FTA 등을 통한 소통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 주도로 담당부처 설치 또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적극성과 민첩성을 동시에 보일 필요가 있으며 기업 간에도 기업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한도 내에서 비관세장벽 관련 사례와 정보, 노하우 등을 적극 공유하며 공존, 공영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가 절필하다.❸

3

EU는 현재 100여 건의 무역 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중 15건이 중국산 철강제품과 관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 이민선 관세사(Ciel Plus)

사진 한국경제신문

많은 사람들이 손목시계를 손목 안의 작은 우주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교한 시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브먼트에 따라 HS 코드가 달라지기도 한다.



실전 품목분류: ④시계

귀금속 시계는 HS 9101호,
스마트워치는 무선 통신기기인
HS 8517.62호로 분류

시계가 없다면 우리의 생활은 과연 어떻게 될까? 1분 1초를 헤아리며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하루 동안의 시간변화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시계는 필수품이 되었다.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는 시계의 품목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날의 시계는 크게 시계바늘이 움직임에 따라 시각을 나타내는 아날로그시계와 내부에 태엽이 없고 전자회로만으로 되어 있어 숫자로 시간을 나타내는 디지털시계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계는 대개 가정용 또는 장식용으로 이용되는 벽시계, 좌종시계 등의 큰 시계(clock)와 소형의 휴대용 시계

(watch)인 손목시계, 회중시계, 목걸이시계, 반지시계 등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 요즘 시계에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 이외에도 여러 기능이 추가된 경우가 많다. 날짜, 요일을 표시하거나 스톱워치 기능, 알람 기능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휴대폰 등 시계기능이 추가된 전자기기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많은 IT회사가 스마트워치에 관심을 가

지면서 갤럭시기어 등과 같은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마트워치는 현재 시계로 평가되지 않고 전자기 기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그럼, 시계는 어떻게 품목 분류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은 HS 9101호

관세율표 상 시계는 큰 틀에서 제91류(시계와 그 부분품)에 분류된다. 제91류에는 주로 시간을 측정하거나 시간에 관련되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데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기기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기에는 사람이 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 시계와 스톰워치, 시각의 기록용기기, 시간의 간격을 측정하는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및 이들의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91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그 재료를 불문하기 때문에 귀금속, 천연 또는 양식 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장식되었거나 테를 두른 것도 포함된다.

먼저 큰 시계인 벽시계, 자명종시계, 탁상용 시계 등은 HS 9105호에 분류되며 4단위 이하는 그 구동방식에 따라 세분화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해시계나 물시계, 모래시계의 경우에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된다는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패션의 아이콘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고 다니는 손목시계. 자신의 손목에 착용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이들에게 선물할 때도 손목시계는 중요한 목록이 되고 있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식에서 주고받는 예물로도 손목시계는 빠지는 법이 없다. 손목시계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는 쿼츠 시계, 학생들이나 군인들이 많이 착용하고 스포츠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자시계, 기계식으로서 직접 태엽을 감아 시계를 돌리는 형식인 매뉴얼 와인딩 시계와 시계 속 로터가 스스로 태엽을 감는 오토매틱 와인딩 시계, 그리고 가장 고급시계로 불리는 뚜르비옹이 있다. 관세율표상 손목시계는 용도나 물품금액이 아닌, 귀금속 여부에 따라 HS 9101호와 HS 9102호로 나누어 분류되고 있다. 즉,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은 HS 9101호에 분류되며, 케이스가 귀금속

제가 아닌 시계는 HS 9102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어, 손목시계가 스테인레스 재질로 된 것이라면 HS 9102호에, 다이아몬드로 된 것이라면 HS 9101호에 분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계라 할지라도 어린이가 시간의 개념과 시간을 말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등 어린이가 가지고 놀면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완구용 시계는 완구류와 함께 HS 9503호에 분류된다. 한편, 시계라도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시계는 골동품으로 보아 HS 9706호에 분류되기도 한다.

무브먼트에 따라 HS 9108호, HS 9109호로

나누어 분류

많은 사람들이 손목시계를 손목안의 작은 우주라고 부른다. 그만큼 시계는 많은 부품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이중 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바로 시계를 움직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무브먼트이다. 관세율표에서 시계의 핵심부품인 무브먼트는 손목시계 등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의 경우 HS 9108호에, 벽시계 등에 사용되는 클록형 무브먼트는 HS 9109호에 나누어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손목시계에 들어가는 스프링과 기어는 보통 1cm가 되지 않는 매우 작은 금속이다. 이러한 작은 금속들이 100개 이상 모여 제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계에 사용되는 각종 스프링, 문자판, 지침 등은 시계의 부분품으로서 HS 9114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시계에만 전용으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시계의 유리와 추는 재질에 따라 분류된다.

요즘 가장 핫한 시계가 있다. 바로 스마트 워치이다.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문자 확인과 전화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스마트워치의 품목분류는 과거 스마트기기의 사례에서 봤듯이, 시계의 기능 이외에도 스마트폰과의 통신을 통한 전화발신, 전화수신 및 문자메시지 수신, SNS 기능, 음악재생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보아 HS 8517.62호에 분류된다. 앞으로는 또 어떤 다양한 시계들이 나오게 될지 궁금해진다.❷

글 김기현(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사진 한국경제신문

중국 비관세장벽 뛰어넘기

전시회 및 인증 미대상 품목 적발 건수 증가, 절차 숙지 필요



중국에서 개최되는 행사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려던 물품이 중국 통관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증대상 여부를 국내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확인 후 수출 진행했으나 중국 규정 및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반송 조치 혹은 압류되는 안타까운 사실도 목격된다. 이에 따라 중국 해관의 통관 관련 규정 및 절차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 기본규정

중국 내 전시회 전시개최자와 전시참가자는 전시품 입국 20일 전, 주관지역 세관에 관련 부서 등록 증명 혹은 비준 문서 및 전시품 목록 등 관련 증명을 제출하고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련 부서 행정 허가 항목에 속하지 않는 전시회의 경우, 전시개최자와 전시참가자는 주관지역 세관에 전시회 초청서, 부스확인서 등 기타 증명 문건 및 전시품 목록을 제출하고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내 전시회 기간 동안 소모하거나 배포한 아래에 속한 용품(이하 전시용품이라 함)은 세관에서 전시회의 성질, 전시 참가업체의 규모, 관람객 수 등 상황에 따라 그 수량과 총액을 사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와 수입과징금을 면제한다.

단, 전 (1)항에서 열거한 물품은 이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① 전시참가자가 무료 제공하고 전시회 기간 관람객에게 무료로 배포되어 사용 혹은 소비된 것
- ② 단가가 낮고 광고용 샘플로써 사용된 것
- ③ 상업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단위 용량이 최소 소매 포장 용량보다 확연히 적은 것
- ④ 식품 및 음료의 샘플이 본항 (3)에서 규정한 포장에 따라 배포되지 않았으나 확실히 활동 중 소모된 것

- (1) 수입 완제품 혹은 전시기간 동안 산화적재(散貨積載)되어 수입한 원료를 이용해 만든 식품 혹은 음료 등을 포함한 전시 활동 중 샘플
- (2) 전시된 기계 혹은 부품에 시범 조작하여 소모되거나 손상된 자재
- (3) 임시 진열대에 진열, 장식되어 소모된 저가 물품
- (4) 전시기간 관람객에게 무료로 배포한 관련 홍보품
- (5) 전시회에 제공하여 사용된 파일, 도표 및 기타 문서

전시용품 중 알코올 음료, 담배 제품 및 연료는 관련 세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 시행 허가증서에 속한 전시용품은 세관에 관련 증서를 제출하고 수입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한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전시용품은 법에 따라 초과 부분에 대해 징세한다. 미사용 혹은 미소모된 경우에는 반송 출국하고, 반송 출국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송 수입 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국 내 전시회 전시개최자와 전시참가자는 전시품 입국 20일 전, 주관지역 세관에 관련 부서 등록증명 혹은 비준 문서 및 전시품 목록 등 관련 증명을 제출하고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비강제 성명서 샘플]

최근 한중 간의 외교적인 마찰로 인해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향후 대중국 수출시 관권 법령 사전 숙지 및 유관기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한 중국 수출 행보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절차

전시회 등록 → 임시 수출입 물품에 준한 행정 허가
비준 → 전시품 신청 입국(무역방식전시품은 입국 물품
통관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금 전액 지불) →
서류 통과 허가 → 물품 통과 허가 → 담보기간 내(보통
약6개월) 반송 출국 → 보증금 반환 수속 처리

◎ 비강제 성명서란?

제품이 CCC 강제대상 목록에 속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제공한 제품자료 및 중국규격(GB)에 의거하여
인증대상 여부를 판단, 인증대상이 아닐 경우 발급
가능한 설명서

◎ 비강제 설명서 발급절차

인증대상 확인 및 신청 → 제품 관련 자료 발송 → 자료 검토 및 심사 → 비강제 성명서 심사 및 성명서 발급

◎ 필요서류

- ① 제품사양서 또는 제품규격서
 - 제품정격사양, 제품기술 data 등 내용 필요
 - ② 제품 매뉴얼
 - 제품사용, 제품 장착 설명 등 필요
 - ③ 제품사진(정면, 측면, 라벨, 어댑터 등)
 - 컬러사진 필요
 - ④ B/L, C/I, P/L(선전 관련 증빙서류)

****** 상기 자료들은 모두 영문 또는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낱장마다 회사직인 날이 후 원본발송 필요

※ 비강제 성명서 주무기관 :
CCIC KOREA(중국검험인증그룹 코리아컴퍼니) ●

글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⑩ 중국 지식재산권 형법 II

형법 규정만이 아닌 관련 사법해석 및 통지 등 함께 파악해야

중국 형법에 규정된 지식재산권 범죄에 관한 내용은 불명확한 부분 또는 해석의 폭이 넓은 문구를 사용하는 등 실무적으로 그 적용과 해석이 매우 어렵다. 이에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그에 따른 실무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법해석 및 통지 등의 내용을 통하여 보완하거나 보충하고 있다. 이에 중국 지식재산권에 관한 형법 적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법해석 및 통지를 함께 파악하고 살펴보아야 보다 명확하게 제대로 알 수 있다.

중국 지식재산권에 관한 형사적 보호는 형법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통지나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의하여 규정하기도 한다. 중국 지식재산권에 관한 형사 범죄에 관한 기본이 되는 형법은 그 처벌 요건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실무상 형법 내용만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관련 사법해석 및 통지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적 보호에 관하여 제정·반포된 주요 통지 또는 사법해석으로, 2010년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 입건 및 소추 표준에 관한 규정2」의 통지(关于印发《最高人民检察院公安部关于公安机关管辖的刑事案件立案追诉标准的规定(二)》的通知), 2007년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사법해석규정(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的司法解释规定)」, 2004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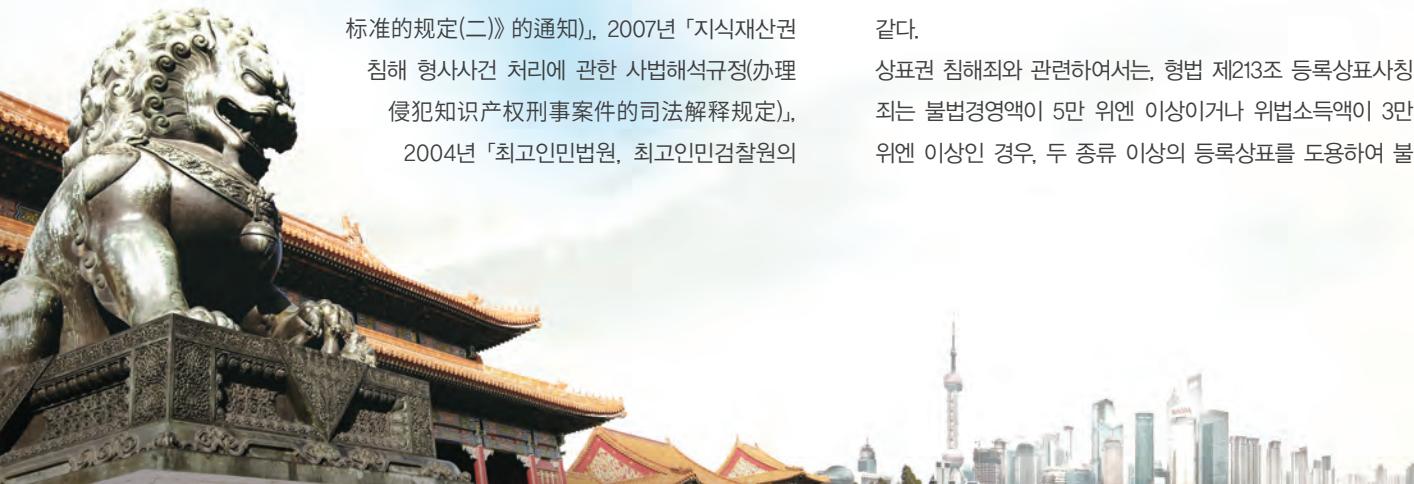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을 처리의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등이 있다.

1. 2010년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 입건 및 소추표준에 관한 규정 2」의 통지의 내용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2010년 5월 7일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관한 입건 및 소추 표준이 되는 기준을 마련하여 공포하였다. 본 통지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은 제69 내지 7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입건·소추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표권 침해죄와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213조 등록상표사칭 죄는 불법경영액이 5만 위엔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3만 위엔 이상인 경우, 두 종류 이상의 등록상표를 도용하여 불





법경영액이 3만 위엔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2만 위엔 이상인 경우, 기타 심각한 상황인 경우 소추해야 한다. 또한 형법 제214조 등록상표사칭상품판매죄는 판매금액이 5만 위엔 이상인 경우, 판매하지 않았으나 상품 가치가 15만 위엔 이상인 경우 판매금액이 5만 위엔 미만이나 이미 판매한 금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상품 가치의 합이 15만 위엔 이상인 경우, 기타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 소추해야 한다. 또한 형법 제215조 등록상표표지불법제조 및 불법제조등록상표표지판매죄는 표지 판매한 수량이 2만 건 이상이거나 불법경영액이 5만 위엔 이상 또는 위법소득액이 3만 위엔 이상인 경우, 두 종류 이상의 표지 판매한 수량이 1만건 이상이거나, 불법경영액이 3만 위엔 이상 또는 위법소득액이 2만 위엔 이상인 경우, 기타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 소추해야 하다.

한편, 전리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216조 전리사칭죄는 불법경영액이 25만 위엔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15만 위엔 이상인 경우, 전리권자에게 직접적인 손해 50만 위엔 이상 초래한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전리권을 도용하여 불법경영액이 10만 위엔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5만 위엔 이상인 경우, 기타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 소추해야 한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219조 영업

비밀침해죄는 권리자가 50만 위엔 이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위법소득액이 50만 위엔 이상인 경우, 권리자가 파산한 경우, 기타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소추해야 한다.

2. 2007년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사법해석규정」의 내용

본 사법해석은 2007년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와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회의를 통과하여 공표되었고,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전에 반포한 사법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해석을 적용한다. 본 사법해석은 주로 저작권 침해죄에 관한 불명확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침해죄의 소추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집행유예 조건 및 벌금 병과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저작권 침해죄와 관련하여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그 문학작품, 음악, 영화, TV,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의 작품을 복제하고 또한 그 복제품의 수량이 합계로 500장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 제217조 저작권침해죄에서 규정한 “기타 엄중한 정상이 있는” 데 해당되며, 복제품 수량이 2,500장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 제217조에서 규정한 “기타 특별히 엄중한 정상이 있는” 데 해당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형법 제217조에서의 ‘복제 발행’에는 복제, 발행 또는 복제와 발행을 동시에 하는 행위로 포함하며, 침해 제품의 소지자가 광고, 주문 등 방식으로 판촉하는 경우에도 ‘발행’에 해당한다.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죄 일반에 관한 집행유예 여부에 있어서도 i)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벌을 받은 후에 다시 침해죄를 저지른 경우, ii) 반성하지 않는 경우, iii) 불법소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iv) 기타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죄 일반에 관한 벌금 병과에 대해서도, 침해에 대한 불법소득, 불법 경영액수, 권리자의 손해, 사회적 위해성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금 액수로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이거나 불법 경영액수의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확정한다.❷



실전 FTA 활용 노하우: 인증수출자 고시 개정 주요내용

원산지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자율점검 횟수 2회로 확대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인증수출자 고시"라 함)에 대한 2016년 9월 개정과 관련하여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FTA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전면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2016년 7월 1일, FTA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인용했던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고시 또한 전면 개정되었다.

1) 인증수출자 신청인의 범위 명확화

종전 "인증수출자 고시" 제5조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자와 관련하여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수출자로부터 서면으로 위임을 받은 경우로서 「관세사법」 제3조제1항의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으로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2)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요건 시행규칙 상향 규정 등 (일부 내용 고시→시행규칙)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은 "인증수출자 고시"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표현만 달라진 것도 있으나 일부 지정 요건이 상향되었으며, 고시에서 규정하던 지정 요건이 FTA특례법시행규칙으로 상향 이전됨에 따라 상위 규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수

정하였다.

우선, 종전 고시에서는 관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하였으며, 관세사·공인회계사·관세업무 담당 변호사는 20점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관세 관련 자격증에 대해 최대 5점이라고만 되어 있고 정확히 자격증 별로 몇 점이 부여되는지 모호하였던 내용을 자격증당 2점(최대6점)이라고 명확히 표현하였다. 또한, 관세사 등의 자격증에 대해 20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고시 상에서는 삭제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제외"라고 개정안에 기재되어 있으나, 별표 상의 해당 내용만 보고는 무엇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그 표현이 모호하여 혼동의 여지가 있으나 FTA특례법시행규칙 상 해당 업체의 소속 직원으로서 원산지 관리사, 원산지 관리사 교육 이수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 또한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인정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FTA 관련 업무전담 경력 기간에 따라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업무전담 경력은 삭제하였다. 이는 FTA 관련 업무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 FTA 업무 관련 경력보다는 인정된 교육을 받는 것이 원산지 관리 업무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행 규정	개정안
<p>「인증수출자 고시 별표 3 中」</p> <p>②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최대 5점 (단, 관세사·공인회계사·관세업무 담당 변호사 : 20점) – (수정)</p> <p>④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전담 경력 : 2점~5점 (1년 이상 : 2점, 2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4점, 4년 이상 : 5점) – (삭제)</p>	<p>②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p> <p>* 소지자: 자격증당 2점(최대 6점) *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제외</p>

3)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횟수 확대

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이 종전 2~3년(품목별 2년/업체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자율점검 횟수가 1회였던 것을 2회로 확대하였다. 이는 단순히 유효기간의 확대에 비례하여 횟수 또한 증가한 것 이외에 점차 증가하는 원산지 검증에 업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의 자율적 원산지 관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안의 원칙적인 자율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1회차 :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2. 2회차 :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

4) 인증수출자 법규 위반사실 조회 및 확인 방법 명확화 및 절차 개선

종전에는 하기와 같이 관세조사, 원산지 조사 등의 업무를 실시한 부서에서 해당 결과를 인증수출자 관리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인증수출자 관리담당 부서에서 인증수출자 인증 심사 및 취소 사유 파악을 위해 관련 위반사항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즉, 종전에는 타 심사 부서에서 심사 결과에 따른 통지를 통하여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개정 후에는 인증수출자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직접 위반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효율성이 제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❷

현행 규정	개정안
<p>제17조(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p> <p>① ~ ③ (생 략)</p> <p>④ 세관장은 인증수출자가 현지확인에 불응·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p> <p>⑤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시한 부서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담당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자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세법 제12장의 관세조사(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심사(탈루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또는 사전검증을 실시한 경우 	<p>제17조(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현지확인에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p> <p>⑤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담당 부서장은 인증 심사 및 취소 사유 파악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영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사실 여부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하게 한 사실 여부

글 유영웅 관세사(관세법인 네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사항

전문가 조력 범위, 현지조사에서 원산지 조사과정 전체로 확대

원산지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등은 FTA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2016년 7월 1일자로 FTA이행 특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10월 10일자로 FTA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FTA특례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서식 등을 일괄정리하고 원산지 조사 프로세스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중요 개정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FTA 원산지 조사는 협정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절차와 방법이 다르며 그에 따라 개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협정마다 다르게 규정된 원산지 조사방법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이행 특례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1. 간접조사 결과회신 받은 후 국제현지조사 가능한 협정(중국, 베트남) 추가(제64조 제4항)

간접조사 방식을 채택하는 협정의 경우 수출자의 관세당국이 자국의 수출자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우리 관세당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관세당국은 원산지 조사 결과에 의문이 있는 경우엔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아세안, 인도, 폐루, 중국, 베트남의 경우 상대국을 직접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64조(회신결과의 처리)

-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원산지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산지조사 종결처리
 2. 원산지 등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재조사 요청
 3. 아세안, 인도, 폐루와의 협정의 경우로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 **현지방문**조사 통지

제64조(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

-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원산지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산지조사 종결처리
 2. 원산지 등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재조사 요청
 3. 아세안, 인도, 폐루, **중국, 베트남**과의 협정의 경우로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 **현지조사** 통지

2. 원산지증명서 보완요구 관련 변경사항 반영(제50조 제4항)

개정 전 자료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보정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상황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0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요청)

-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중 원산지증명서가 규칙 제1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오류 **보정요구서를 송부하여 보정을 요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과 협정적용신청서의 특혜적용 협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 작성 또는 발급한 자가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또는 발급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보정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즉시 서면조사 통지하고 체약상대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를 대상으로 국제검증을 할 수 있다.

제50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 요청)

-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중 원산지증명서가 규칙 제2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오류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3. 원산지 위반 등에 관한 제보나 밀수신고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 근거 신설(제19조 제5항)

부정특혜와 관련된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9조(외부제보의 처리)

- ⑤ 밀수제보자 또는 탈루 제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절차는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국내 현지조사 전 현지조사 예정통지기간 변경(제36조 제2항)

개정 전에는 현지조사 사실을 현지조사 7일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는데 3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개정되어 조사대상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6조(국내 현지조사)

- ②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유선확인 등**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직접 교부
2. 모사전송(FAX)
3.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e-Mail)

제36조(국내 현지조사)

- ②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직접 교부
2. 모사전송(FAX)
3.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e-Mail)

5. 현지조사 우선 가능 범위 신설(제56조)

원산지 조사는 서면검증을 우선하도록 하고 서면조사 결과 부족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6조(국내 현지조사)

- ①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가 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세관장이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수량과 조사대상
물품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세청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 ②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와 제5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납세자권리현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 ③ 국내 현지조사의 연기, 조력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 제3항
및 5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6. 변호사·관세사 등 전문가 조력 범위를 현지조사에서 원산지 조사 과정 전체로 확대(제22조 제1항)

원산지 현지조사 과정에서만 관세사 또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원산지 조사 전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제22조(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법 제13조 제9항 및 「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관세사(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조력을 받으려는 경우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력의 범위는 현지조사과정에 대리인의 참관 또는 의견의
진술로 한다.
- ② 세관장은 대리인이 현지조사 과정에 참관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법 제17조
제8항에 따라 변호사 또는 관세사(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조력을 받으려는 경우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 ② 세관장은 대리인이 원산지조사 과정에 참관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세 전 통지가 가능하도록 신설(제76조 제4호)

원산지 조사 결과 결정 또는 추징 세액이 있는 경우 과세 전 통지를 하게 되는데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생략하고 과세 전 통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76조(과세 전 통지)

- 세관장은 경정할 또는 부과(추징)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2조에 따라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과세 전
통지서를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로부터 영 제18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2. 영 제18조의 이의제기를 세관장이 심사하여 이유 없음
결정을 내리는 경우
 3. 제64조의 회신결과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제75조의 원산지 조사 결과통지를 하는 경우

〈신설〉

제76조(과세 전 통지)

- 세관장은 경정 또는 부과(추징) 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4조에 따라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과세전통지서를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로부터 영 제15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2. 영 제15조의 이의제기를 세관장이 심사하여 이유 없음
결정을 내리는 경우
 3. 제64조의 회신결과가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제74조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하는 경우
 4. 영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과세 전 통지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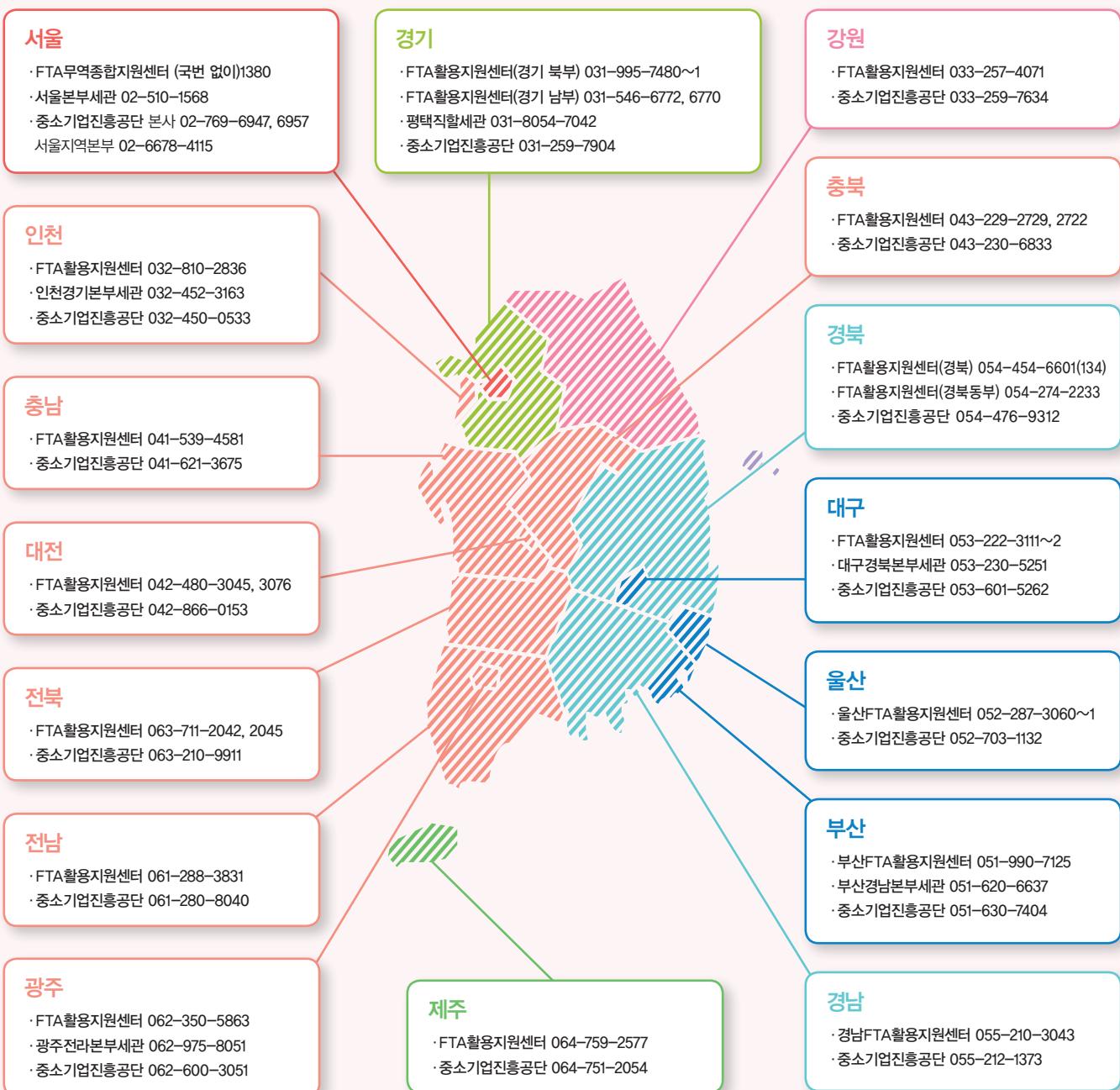
이외에도 원산지조사 처분심의회 운영절차 등 개선, 인천세관에 원산지조사부서를 추가, 일부 서식의 삭제 및 변경 등의 개정사항이 있다.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 및 훈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행정규칙’ 메뉴에서 찾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 원산지 조사 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란다.❷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 안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TA는 바로 중소기업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FTA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FTA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글 최효찬 자녀경영연구소 소장(문학박사)

사진 한국경제신문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 윤리학의 목적은 '선'의 탐구라고 말한다.

총 10권 가운데 특히 4권 '재물'과 8권 '친애'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용을 지키며 돈을 쓰는 법과 인간관계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④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친애의 기술’ 또는 ‘돈을 잘 쓰는 기술’

플라톤은 2500년 동안 한결같이 서구철학사의 중심이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후 약 300년 동안 ‘잊힌 철학자’였다. 그러다 기원전 76년 문법학자 안드로니코스에 의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서구철학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할 수 있었다. 학자들은 이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다시 ‘잊힌 철학’이 되었다. 무려 천 여 년 동안 동면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슬람 세계에서 번역되어 명맥이 유지되고 십자군전쟁을 거치면서 다시 서구에 ‘역수입’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념론은 중세를 지배한 스콜라철학에 녹아들면서 13세기에 극적으로 부흥기를 맞았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대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신학과의 관계를 정립해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어떤 진리들은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 내에 있으나 또 어떤 진리들은 이 경계를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이성으로 신성을 풀 수 없지만 ‘예외조항’을 만들어둔 것이다.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듯이 말이다. 이에 따라 초월적인 ‘부활’이나 ‘구원’의 문제는 바로 이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선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 다시 단죄되는 수난을 당한다. 루터는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형이상학, 영혼론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의 사물을 다루는 서적 역시 모두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치 진시황이 유학에 관한 모든 문헌을 불사른 분서갱유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루터가 1508년 처음으로 강단에 섰을 때 강의한 책이 다름 아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었다. “나는 논리학, 수사학 그리고 시학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계속 사용하거나 또는 요약된 형태로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청년학도들에게 연설과 설교를 잘 하도록 연습시키기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 신학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자 그를 이단

으로 돌아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따르면, 윤리문제의 탐구에서 가장 좋은 선(善, agathon)은 '행복'이라고 했다. 또 그는 윤리학의 목적은 '선'의 탐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선의 탐구는 도시국가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개인보다 국가를 우위에 두었다. 이 책의 주제는 바로 '인간에게 있어 선이란 무엇인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생활 형태는 향락적 생활, 정치적 생활, 관조적 생활 등 세 가지로 나뉘고 관조적 생활이 가장 행복한 삶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런 관조적 정신 활동은 자발성과 여유가 있으며, 인간의 능력 한계 내에 있는 한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정신활동에는 행복한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좋은 점이 있다. 그러므로 관조적 정신활동이 평생토록 지속된다면 바로 여기에 인간의 완전한 행복이 있는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정치가 개인의 행복을 앗아갈 정도로 정치인들에 의해 정치혐오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생활이야말로 불행한 삶으로 빠져들게 하는 주범이라는 생각마저 듦다. 비단 나만의 과민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과도함과 부족함은 악덕의 특징이며, 중용은 덕의 특징이다"라고 강조한다. "선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요, 악으로 가는 길은 여럿이다."고 했다. 이는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에서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 각각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에서 유래했다는 생각마저 듦다.

과도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중용'이다. "방탕한 사람은 지출에 있어 지나치고 취득에 있어 모자란데 반해, 인색한 사람은 취득에 있어 지나치고 지출에 있어 모자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재물에 대한 관점을 '너그러움'과 '호탕함', '방탕함'과 '인색함'의 네 가지 부류로 나눈다. 이때 너그러움과 호탕함은 중용을 실천하는 덕의 길인데 반해 방탕함과 인색함은 악덕의 길에 해당한다. 재물에 대한 태도에서 너그러움과 호탕함은 주로 부자들의 덕목인데 특히 호탕함은 재물이 많은 부자일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인색함은 방탕함보다도 더 큰 악덕에 해당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한다. 아마도 그것은 '덕의 선순환'이 아니라 '악덕의 악순환'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는 '돈을 잘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돈을 잘 쓰는 기술을 배워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아리스토텔레스
(BC 384년 ~ BC 322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과학 제
부문의 기초를 쌓고 논리학을
창건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우다이모니아)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덕에 따라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각각의 맥락에 따른 행복의 정의를
보여준다.

현대사회에 딱 맞는 인간관계론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4권 재물에 대해서와 함께 8권 친애에 대해서도 꼭 읽어보며 음미할 만하다. 여기서 친애의 기술, 즉 '친구를 잘 사귀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그 기준에는 유익함과 쾌락 그리고 선을 든다. "완전한 친애는 선하고 덕에 있어 서로 닮은 사람들의 친애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가 선한 사람인 경우에만 서로에게 선한 것을 원하며, 또 그들 자신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 친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참된 의미에서 친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친애는 그들이 선한 동안은 내내 유지된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과 친애의 최선의 형태이다." 이런 친애를 해본 적이 있는가? 또는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한번 자문해볼 일이다.

대부분 유용성 때문에 친구가 된 사람들은 이익이 다하면 서로 헤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대의 유익함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얻을 어떤 좋은 것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다. 유익함에 기초를 둔 친애는 장사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그대로 대입해놓고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은 역경에 처했을 때 자기를 도와 줄 사람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윤택할 때도 자기가 도움을 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게 어쩌면 행복의 윤리를 설파한 이 책의 결론이라는 생각마저 듦다. 무려 2350여 년 전에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오늘날 인간관계의 핵심을 짜르고도 남는다. 말하자면 오늘날 서양의 모든 행복론이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자기계발서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❷

정리 김은진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FTA NEWS

한·에콰도르 SECA 제4차 협상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분야 논의 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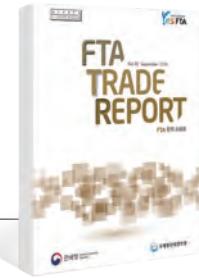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과 알레한드로
다발로스 에콰도르 대외무역부
통상협상차관보를 비롯한 양국
정부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해
4차 협상을 진행했다.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4차 협상이 10월 10일 월요일부터 10월 14일 금요일까지 5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어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분야 등에 대한 양허협상을 본격 진행했다. 에콰도르측은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용어 대신 다른 이름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양측은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라는 명칭에 합의했는데, 내용은 FTA와 동일하다. 특히, 상품양허 자유화율 개선을 위한 3차 양허안(offer) 교환방식 및 교환일정에 합의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협정 체결을 위해 핵심 관심품목¹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비스, 정부조달 양허협상의 경우 항후 우리기업의 실질적인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콰도르 측과 협의를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에콰도르 양측은 상호교역 및 투자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촉진반 구성에 합의하고, 오는 11월 제1차 실무협의(working group)를 열기로 했다.

¹ 양국 교역액(억 달러)

('06) 3.7 → ('10) 8.9 → ('14) 11.5 → ('15) 9(한국)
자동차·자동차부품, 합성수지(섬유)/
(에콰도르) 원유, 석유, 과실류 수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5차 공식협상 개최 지재권, 위생검역 등 14개 분야 협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5차 공식협상이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중국 텐진에서 열렸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제4차 장관회의(8.5)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품 시장접근 개선과 서비스 자유화 제고를 위한 기준설정 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지재권, 위생검역(SPS), 원산지, 경제기술협력 등 14개 분야²에서 협정문 협상 진전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 8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은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정상 차원의 추진의지를 재확인하고 협상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내용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한, 균형 잡힌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의 조속한 타결이었다. 앞으로 참여국들은 이를 바탕으로 금번 협상 및 12월 16차 공식협상을 통해 핵심쟁점 이견 축소 및 실질적 진전 도출에 노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진전 차원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이 되도록 협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

작업반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 지재권, 경쟁,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8개)
소작업반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SPS, STRACAP(=TBT), 금융, 통신 (6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은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정상 차원의 추진의지를 재확인하고 협상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2016년 3분기 'FTA 무역리포트' 발간 한·콜롬비아 FTA 발효 특집 및 HS 2017 개정 주요내용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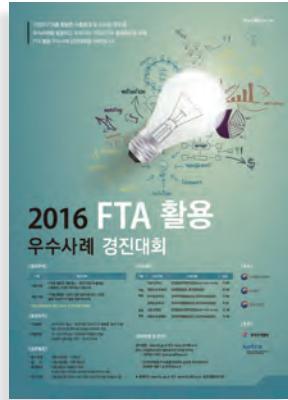
관세청은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동향·전문 지식 등 종합 정보를 수록한 2016년 3분기 'FTA 무역리포트'를 발간했다.

이 리포트는 지난 7월 15일 발효된 한국·콜롬비아 FTA 특집으로 구성해, 협정의 주요 내용 및 활용전략, 수출유망 품목, 콜롬비아 개정 관세법 내용 등을 수록했다. 또, 콜롬비아가 속한 남미 3개국(칠레, 페루, 콜롬비아) 거시경제 운영 현황과 각 국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의미도 함께 담았다.

한편, 전 세계 200여 개 국가가 사용하는 국제공통의 물품 분류체계인 품목분류코드(이하 HS)의 6차 개정(HS 2017) 주요 내용과 시사점도 수록했다. 그 밖에도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상위 품목의 2016년 상반기 수출입 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로 나타낸 'FTA지도'를 비롯하여, 자동차산업의 FTA 활용 확대 방안, 6월 제1차 협상이 개시된 한국·이스라엘 FTA의 시사점과 이스라엘 세율 및 수입규제 안내,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의 신규기능과 교육 일정 등도 수록했다. 관세청은 이 리포트를 책자로 발간하여 수출입기업, 대학교,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에도 전자책(e-book) 형태로 등재했다. ☞



Information



2016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업의 FTA를 활용한 수출증대 및 신시장 개척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 응모 주제 |

- 기업부문 FTA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성공, 수출확대, 신시장 개척 등의 성공사례
- 학생부문 FTA를 활용한 기업의 가상 성공사례 또는 기업이 활용가능한 FTA 활용 정책 아이디어
* 관세, 비관세정책, 투자, 서비스 등 FTA 관련 전문야

| 응모 자격 |

- 기업부문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으로서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증대 및 신시장 개척 등의 성공사례 보유 기업
- 학생부문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2016. 12. 20 기준) – 1팀 3인 이내

| 공모 일정 |

- 접수 일정 10월 24일(월) ~ 11월 18일(금)
- 심사 11월 28일(월) ~ 12월 2일(금)
- 결과 통보 12월 9일(금) 개별통보 예정
* 본선진출작 14개 팀은 경진대회 발표를 위한 준비 필요
- 경진대회 12월 20일(화) 13:00 ~ 17:00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로즈룸)

| 시상 내용 |

- 기업부문 대상(2개사), 최우수상(4개사), 우수상(4개사), 장려상(6개사)
- 학생부문 대상(2개팀), 최우수상(2개팀)

| 접수방법 및 문의 |

-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 이지형 사무관 (044)203-4158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송상영 원산지관리사 (02)6000-4685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인도네시아 시장 집중 분석기사를 아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평소 할랄 음식에 관심이 많아 설명회도 가끔씩 찾아가곤 했었는데, 함께하는 FTA에서 자세하게 다뤄주셔서 좋은 정보도 얻고 자료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수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계탕, 신선포도 등 우리 농식품이 수출길에 오른다는 사실에 기쁨이 벅찹니다. 삼계탕이 중국과의 검역협상이 마무리 됨에 따라 수출의 길이 개시된 상황에서, 신선 포도 역시, 앞으로 다른 농식품들도 수출의 길에 앞장서서 밝은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조세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29개국에서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규제가 심해지고 있으니, 그에 맞는 경제 대응책들이 나오리라 기대해봅니다.

최명연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계속 이슈가 되는 보호무역주의가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기조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자유무역이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무역이 축소되면서 생길 피해나 여러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정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함께하는 FTA

November 2016 / vol.54 www.fta.go.kr

알림

독자엽서를 이메일로도 받습니다.
보내시는 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엽서의 질문 답변
내용을 적어서 agami2@korea.kr로 보내주시면,
좋은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존처럼 우편엽서로 보내셔도 됩니다.

함께하는 FTA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E-mail

□□□□□

전화번호

받는 사람

〈함께하는 FTA〉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3 0 1 1 8



〈함께하는 FTA〉는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열린 공간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함께하는 FTA〉를 만들어가는 에너지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11월 21일까지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FTA〉를 보신 소감은?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는 무엇이었나요?

이유를 적어주세요.

〈함께하는 FTA〉를 어디에서 보셨나요?

예) 은행, 관공서, 도서관 등

〈함께하는 FT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또는 FTA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정기구독(무료) 신청을 받습니다.

신규 독자 신청 또는 기존 독자 주소 변경은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agami2@korea.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호에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아래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함께하는 FTA〉 10월호
독자 이벤트 당첨자 명단

조세자 광주 북구 두암동
최명연 대구 달서구 죽전동
한수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강정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이춘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강미야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백귀혜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박윤진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남로
전경욱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안창로
마상재 부산시 북구 화명3동

※독자엽서 당첨상품 반송 시 1년 간
(우체국 배송자료 보관 시한) 보관합니다.

생활 속 세금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마을세무사를 통한 세금고민 해결법 4단계



행정자치부



한국세무사회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가공해 제공